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9-86
----------	---------

제출연월일 : 2019년 11월 일
제 출 자 : 강서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조례의 근거가 되는 규정인 「지역보건법」 제26조가 제34조로 변경되어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과태료 부과 근거 조문을 「지역보건법」 제26조에서 제34조로 변경
(안 제1조, 제3조, 별표)
- 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변경
(안 제5조)
- 다. 과태료 부과대상을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맞게 변경(안 별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제3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9.9.25.~10.15.) 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 사전심사 결과 :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4)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 중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8호 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횟수를 계산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과 태 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제1호	100	200	300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제2호	100	200	300

여 처분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하고, 의견제출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되 당사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한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 통지 및 납부 고지는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납부 기간 경과후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에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지체없이 관
할 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이의
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
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
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
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
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6조(과태료 수납부 등 관리) 구
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8호
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
정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
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
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삭 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과 태 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법 제26조 제1항제1호	100	200	300
법 제21조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자	법 제26조 제1항제2호	100	200	300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횟수를 계산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과 태 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 제1호	100	200	300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 제2호	100	200	300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단서중 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 시 예상되는 비용 없음

4. 작성자: 보건소 의약과 과장 장진수

(담당 : 의료기술9급 박솔기 / ☎2600-5952)

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서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개정사유

- 현행 조례의 근거가 되는 규정인 「지역보건법」 제26조가 제34조로 변경되어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 근거 조문을 「지역보건법」 제26조에서 제34조로 변경(안 제1조, 제3조, 별표)
-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변경(안 제5조)
- 과태료 부과대상을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맞게 변경(안 별표)

□ 검토의견

- 동 개정안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조례 근거 조문을 변경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과태료 부과대상을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평가번호	2019 - 41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직 급	행정7급	성 명	김태환
입안주무부서	의약과	통보(조치)일		2019. 10. 15.	
관련조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개정안 전부		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

관리번호	2019A서울강서046			
정책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서명	의약과		
	담당자명	박솔기	전화번호	02-2600-5952
담당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서명	가족정책과		
	담당자명	최은영	전화번호	02-2600-6762
체크리스트 제출일자	2019년 10월 01일			
완료(제외) 통보일자	2019년 10월 15일			

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10월 15일

지역보건법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79호, 2018. 12. 18,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854, 3799

제3장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6. 12. 2.>

제17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 ① 당사자는 과태료,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증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내는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납부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제19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제36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정정부과 하는 등 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제21조(법원에의 통보)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행정청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인 가운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질서위반행위의 조사)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의 청취

2. 당사자에 대한 보고 명령 또는 자료 제출의 명령

②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고자 하는 행정청 소속 직원은 당사자에게 검사 개시 7일 전까지 검사 대상 및 검사 이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또는 검사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제23조(자료제공의 요청) 행정청은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6. 12. 2.>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증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삭제 <2018. 12. 18.>

제24조의2(상속재산 등에 대한 집행) ①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법인에 대한 과태료는 법인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4. 5.]

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태료(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 증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행정청에 신청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하는 경우 그 유예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이나 제공된 담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과태료 징수금에 대하여 가산금, 증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교부청구는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⑤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수유예등을 취소하고, 유예된 과태료 징수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과태료 징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 담보의 제공이나 변경,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행정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유예한 기한까지 과태료 징수금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⑥ 과태료 징수유예등의 방식과 절차, 그 밖에 징수유예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

제24조의4(결손처분)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는 등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8.]

부칙 <제15979호, 2018. 12.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